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2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 II.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 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 2. 납세자보호관 제도 현황 및 실적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sup>1)</sup> 2018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sup>2)</sup>되었으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절차 개선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sup>3)</sup>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지방세법」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0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음.  
2) 「지방세기본법」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고(현재 법무담당관), 시민의 납세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참고로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총 2,7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음.
- 민원 유형별로 고충민원은 63건(52건 인용),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요청은 6건(4건 인용), 그 밖의 권리보호 4건(4건 인용), 편의시책 관련 민원 2건, 세무상담 2,660건이었으며, 권리보호요청은 접수된 바 없음.

#### < 2024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

(단위 : 건)

| 구 분  | 총 계   | 납세자 보호 업무  |          |            |           |      | 세무 상담 |
|------|-------|------------|----------|------------|-----------|------|-------|
|      |       | 고충민원       | 권리 보호요청  | 세무조사 연장·연기 | 그 밖의 권리보호 | 편의시책 |       |
| 2024 | 2,735 | 63<br>(52) | 0<br>(0) | 6<br>(4)   | 4<br>(4)  | 2    | 2,660 |

※ ( )안은 인용건수 / 그 밖의 권리보호 :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신청 등

### 3. 조례안의 개정 사항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납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다양한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
- 한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sup>4)</sup>되어 별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 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

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를 무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 < 선정대리인 개요 >

- ▶ 제도정의 :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권리구제 제도'
- ▶ 지원 대상 :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 소유재산 5억 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법인) 자산총액 5억 원 & 매출액 3억 원 이하
- ▶ 신청 방법 : 시세는 서울시에, 구세는 각 자치구에 신청  
시세 자문제도(6개): 서울시 지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지역자원시설세  
구세 자문제도(2개): 각 자치구 재산세, 등록면허세
- ▶ 규모 : 총 20명 (2년 간) [2024. 3. 2 ~ 2026. 3. 1]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등
- ▶ 운영 예산 ('25년 예산안) : 예산 약 10,000천 원  
선정대리인 자문 수당: 1건당 50천~150천 원, 연간 진출 25건 × 100천 원

-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 보호의 실질적 주체인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으며<sup>5)</sup>, 관련 규정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제도 간 일관성 부족 및 운영상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sup>6)</sup>
- 더욱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sup>7)</sup>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업무가 공식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되면서,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 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속한 조례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재무국(세제과)의 업무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였음.

6) 오승규,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과제 2022-13, 202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개정)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sup>8)</sup>

-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을 기존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소유 재산 평가 기준, 위촉 및 해촉 요건,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제1조(목적), 제5조제1항제1호(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등은 문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한 것임.

8) 개정 2024. 12. 31. 시행 2025.1.1.

## < 조례안 개정 세부내용 >

| 구분           | 조항번호         | 개정안                                                                           |
|--------------|--------------|-------------------------------------------------------------------------------|
| 목적           | 제1조          | 현행 조례와 동일(단, 문구 일부 정비)                                                        |
| 납세자보호관 업무    | 제6조          |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 추가                                                               |
|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 | 제23조~제25조 신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신청·통지 등 신설 |
| 기타 정비사항      | 제1조          | 관하여 필요한 → 필요한                                                                 |
|              | 제5조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서울특별시                                                     |
|              | 제7조          | 시 → 서울특별시                                                                     |

- 동 개정조례안은 선정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함으로써 두 제도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특히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관련 규정의 통합과 체계화는 납세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의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제도 간 연계 미흡 및 운영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              |
|-------|--------------|
| 입법조사관 | 연락처          |
| 김수은   | 02-2180-8064 |